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
----------	-----

제출년월일 : '96. 10. 1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금까지는 법률제4120('89. 4. 1)호로 공포한 지가공시및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하였으나 법률제5108('95.12.29)호로 공포한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과 대통령령제15093('96. 6.29)호로 공포한 동법시행령중 개정령과 관련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2조제1항)
- 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안 제2조제2항)
- 다.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 (안 제2조제3항)
-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제1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함. (안 제4조)
- 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항)
- 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2항)
- 사.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안 제4조3항)

☐ 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지가공시및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의2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14조
-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20인”을 “10인 이상 15인”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중 “법제12조제1항”을 “법제12조의2제1항”으로하고 동조제1호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각1인을 포함한 <u>2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각1인을 포함한 <u>2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①----- ----- <u>10인</u> 이상 <u>15인</u> -----.		
②위원장은 <u>시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u>시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u>부시장</u> ----- -----.		
③위원은 <u>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에 지가에 정통한자와 토지평가관련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u>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u>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에 지가에 정통한자와 토지평가관련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u>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u>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한다.		
제4조(심의사항)위원회의 심의사항은 <u>법제12조제1항</u> 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 사항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위원회의 심의사항은 <u>법제12조제1항</u> 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 사항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u>법제12조의2제1항</u> ----- -----.		
1. <u>지가의 공시를 위한 표준지 선정 및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u>	1. <u>지가의 공시를 위한 표준지 선정 및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u>	1. <u>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u>		
2. <u>토지평가에 관한 사항</u>	2. <u>토지평가에 관한 사항</u>	2. <u>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3. 기타 <u>토지평가에 대하여</u>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u>토지평가에 대하여</u>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u>기타시장이 부의하는 사항</u>		